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 수준 상향
 - ▶ 지원대상 기준보수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개선) **190만원 미만**
 - ▶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현행) 60%→(개선) **신규 90% (5~10인미만 80%)**
- ❖ **건강보험료 50% 경감** (18년 한시)
 - ▶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 4대 보험 신규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
 - ▶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월부담액

13.8만원→1.7만원으로 경감

-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 (최저임금 100%)
노동자 1인 기준, 산재보험 제외

4대 보험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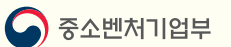
- ❖ **고용보험**
 - ▶ 사업주: 고용창출 · 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 노동자: 실업급여 · 훈련 등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 **산재보험**
 - ▶ 산재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 · 형사적 부담 해소
 - ▶ 산재요양부터 완치까지 의료비, 휴업급여 등 지원
- ❖ **건강보험**
 -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 퇴직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 ❖ **국민연금**
 -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



사장님, 인건비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알아서 드립니다!

지원금액

-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 월중 입 ·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지급방식

-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집, 일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세요!

신청서 접수

- ❖ **온라인**
 -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 **방문 · 우편 · 팩스 (3,940개소)**
 -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명칭 (운영기관)

사이트 주소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minwon.nps.or.kr
고용보험 EDI (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문의 ·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